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69

발의연월일: 2021. 12. 30.

발 의 자:유정주・박홍근・서영교

신영대 • 신정훈 • 이병훈

이장섭 · 이형석 · 전재수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란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 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영상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독립제작사 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 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영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자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 조제20호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또는 시청자와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자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 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 사업자등"이라 한다)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영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동영상제공자"라 한다)
 - 다.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제2항 중 "방송사업자등은"을 "방송사업자등과 온라인동영상제공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 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 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 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 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 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또는 시청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사업 자등은 제외한다.

1. ~ 19. (현행과 같음)

개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또는 시청자와 정보통신망 이 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 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자 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 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 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 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 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업자등"이라 한다)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2 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 사업의 신고를 하고 정보

21. (생략)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 ① (생 략)
- ② 방송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 ② 방송사업자등과 온라인동영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 상제공자는-----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 ⑤ (생 략)

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영상 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게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동영상제공자"라 한다)

다.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 작하여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현행과 같음)

- ①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